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취소 처분 전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통지)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. 12. 21.

고 성 군



1. **공고 내용:** 개발행위허가(협의)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 실시
2. **예정된 처분의 내용:** 개발행위 허가 취소
3. **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:** 허가조건 미이행(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)
4. **처분의 근거:**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33조제1항
5. **청문 대상**

허가번호	위 치	목 적	면적 (m ²)	허 가 자		비고
				주 소	성 명	
2016-96-3	거진읍 초계리 산110번지 외 1필지	태양광발전시설 설치	29,160	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20	휴마웰상사(주) 태양광발전소 대표 김재길 외 9인	허가

6. 청문 일시 및 장소

가. 일시: 2020. 12. 24.(목) 10:00

나. 장소: 고성군청 일상감사장(본관 5층)

7. **공고기간:** 2020. 12. 21. ~ 2020. 12. 23.

8. **게시장소:**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

9. **기타사항:** 당사자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, 당사자 및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

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(협의)
취소 예정임을 알려드리며,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고성군청
종합민원실 허가민원팀(☎033-680-325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
니다.

붙임 의견제출서 및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각 1부. 끝.

의견제출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제출인	성명	
	주소	전화번호
의견제출 내용	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	
	당사자	성명(명칭)
		주소
		(전화번호:)
	의견	
기타		

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제1항(제31조제3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당진시장 귀하

유의사항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- 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3일
신청인	성명		
	주소	전화번호	

신청 내용	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		
	당사자등	성명(명칭)	
		주소 (전화번호:)	
	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	성명(명칭)	생년월일
		주소 (전화번호:)	
당사자등과의 관계			

「행정절차법」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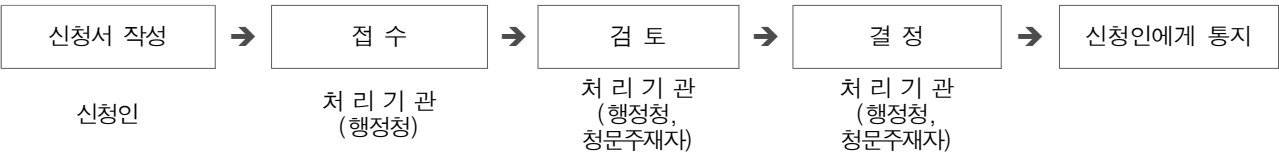
당진시장 귀하

첨부서류	없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- 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2.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처리절차



※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.